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시행)되었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13.)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조정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 재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함.(안 제9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개정사유는?	<input type="radio"/>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9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시행)되었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13.)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조정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 나. 재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함.(안 제98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98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2. (생 략)</p> <p>3. 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가목이외의 주택</p>	<p>제28조(세율) ①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과세표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p>4.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9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u>1,000분의 1.5</u>로 한다.</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8조(세율) -----</p> <p><u>1,000분의 1.4</u>-----.</p>																		

<관계 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